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5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송옥주·김민철·윤미향

이수진(+) · 장철민 · 강은미

임종성 · 안호영 · 전혜숙

맹성규 · 윤준병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 적으로 훼손되고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보호지역의 지정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은 부족함.

이에 우리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를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가치만큼"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2.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통 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
- 3.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 4.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 5.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 업자의 책무) ① (생 략) 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2.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로 복원・복구하거나 환경부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 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 경의 가치만큼 -----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 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자연환경·생태계서비 스 유지・증진계획) ①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서비 스를 유지 · 증진하기 위한 계획 (이하 "자연환경·생태계서비 <u>스 유지·증진계획</u>"이라 한다) 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

-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 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생 태계서비스 유지·증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기본계획
- 2. 제6조제4항에 따라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가 통보하는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
- 3.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 4.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 획
- 5.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